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100호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1. 입법예고 조례안 : 37건

소 관 상임위	발의자 (제출부서)	의 안 명	의안 번호
	계	37건	
의회운영 위원회	신 민 호 의 원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38
행정자치 위원회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39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0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예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1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2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2644
	총 무 과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0
	총 무 과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1
	환 경 보 호 과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2
	환 경 보 호 과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3
	자 원 순 환 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4
	자 원 순 환 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5
	사 회 복 지 과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0
	사 회 복 지 과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1
	사 회 복 지 과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62
	사 회 복 지 과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3
	노 인 장 애 인 과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64
	토 지 정 보 과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5

소 관 상임위	발의자 (제출부서)	의 안 명	의안 번호
문화경제 위원회	김 병 권 의 원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6
	나 안 수 의 원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7
	나 안 수 의 원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8
	허 유 인 의 원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9
	경 제 진 흥 과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56
	경 제 진 흥 과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657
	경 제 진 흥 과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658
	도 시 재 생 과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59
	미 래 농 업 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69
	평 생 학 습 과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72
	문 화 예 술 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73
도시건설 위원회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3
	김 인 곤 의 원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45
	건 축 과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6
	건 축 과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7
	교 통 과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68
	하 수 도 과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70
	하 수 도 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71
	정 원 산 업 과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74

2.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0. ~ 2017. 11. 24. (5일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38호
----------	--------

- 발 의 자 : 신민호, 선순례, 장숙희,
최정원, 유영철, 유영갑
- 발의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 2항의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2. 01>는 규정은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안 제6조제2항)

3. 개정규칙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생략) ②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증인의 선서) ①(현행과 같음) ② ----- <u>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39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나안수,
장숙희

1. 개정이유

- 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2)
-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3)
-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안 제12조 제4항)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전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3(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할 수 있다” 를 “제13조 제2항에 따른다” 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의 3(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u>전반적인 업무보고로 할 수 있다.</u>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 -----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② · ③ (생략) <u><신 설></u>	제12조(위원회 운영)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0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장숙희

1. 개정이유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 바, 상위법령 근거 없이 통지 의무를 부과한 해당규정 삭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

2. 주요내용

-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용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할 의무 삭제(안 제4조제1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맞게 개정(안 제5조제1항)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를 “지급하여야”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 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 ----- ----- ----- 지급하여야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하	

현행	개정안
<u>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u> 4. <u>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u> 5. <u>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u> 6. <u>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1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나안수,
장숙희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신분 노출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안 제5조 제4항)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2」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신고센터의 설치)</u> ①·②·③ (생략) <u><신설></u>	<u>제5조(신고센터의 설치)</u> ①·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u>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2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나안수,
장숙희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대 하고, 이를 통해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안 제14조 제3항)
-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안 제14조 제4항)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4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u> ①·② (생 략) <u><신 설></u>	<u>제14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u>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4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나안수,
장숙희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 안 제2조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 안 제5조 시민의 책무
- 안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 안 제7조 사업비의 지원
- 안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 안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 안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안 제11조 시행규칙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8조
-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제8조, 제56조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능률 향상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10호, 제11호)
- 후생복지제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제1호 ~ 제5호)
 - 맞춤형 복지제도,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맞게 현행화(안 제12조제2항, 제3항)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 구성 위원수를 “20명 이내”를 “7명 이상 16명 이하”로 수정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 근거 마련(안 제19조 ~ 제21조)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안 제19조)
 -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안 제20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21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행정안전부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5. ~ 10. 1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28.(여성가족과-332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14.(전략기획과-1258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5.(순천시 공고 제2017-1427호)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에”를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로, “사람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 9. (생략) <신설> <신설>	<u>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u>----- ----- ----- -----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3.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①·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u>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u>	③ ---- <u>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u>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 ----- -----.
<신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신설>	2.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1.·2. (생략)	6.·7.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설>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신설>	4.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3.·4. (생략)	8.·9.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설>	5.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5.·6. (생략)	10.·11.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생략)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위원장은 <u>부시장</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당연직 위원</u> 가. 국·소·단장 중 2명 나. 직급·직종별 대표 5명 2. <u>위촉직 위원</u> 가.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명 나. <u>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u>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u>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u>----- -----. 1. <u>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u> 3. <u>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u>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u>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18조 · 제19조 (생략)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0조 (생략)	<u>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u> <u>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u> <u>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u> <u>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u> <u>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u>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제24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u>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 <u>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u>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서면 선평리 빗찬들아파트 5개동 820세대 및 도사동 영무예다움아파트 3개동 258세대, 호반 베르디움 그린파크 8개동 642세대가 2017년 11월 입주가 시작되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명칭변경, 오기 수정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 서면 선평리 배들1리 및 배들3리 조정(별표 1)
 - (배들1리 제1반) 주공배들APT 102동 101~1509호 : 제1반 → 제2반
 - (배들3리 제2반) 주공배들APT 107동 → 주공배들APT 108동
- 서면 선평2리 및 선평3리 신설(별표 1)
 - 빗찬들아파트(301동~305동) 5개반 신설
- 도사동 39통부터 41통까지 신설(별표 2)
 - 순천오천 영무예다움 아파트 통반 신설 : 1개통 3개반(39통)
 -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통반 신설 : 2개통 8개반(40~41통)
- 덕연동 69통 1반부터 6반까지 아파트명 변경(별표 2)
 - 부영12차아파트 → 울산에코지오
- 왕조2동 22통 1반부터 6반까지 관할구역 조정(별표 2)
 -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동수) 1101동, 1102동 → 101동, 102동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30. ~ 10. 20.) 결과 : 의견제출자 있음

의견제출자	제출일자	주요내용	수용여부
선평마을 주민	10. 19. (서면접수)	■ [별표1] 서면 행정리 중 선평리를 선평1리로 하고, 입법예고안의 “빛찬들1리, 빛찬들2리” 명칭을 각각 “선평2리, 선평3리”로 변경 요청	<u>수</u> <u>용</u>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28.(여성가족과-332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9. 28.(총무과-2344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31.(전략기획과-149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30.(순천시 공고 제2017-150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면 선평리 배들1리 제1반 주공배들APT 102동 101~1509”를
 “서면 선평리 배들1리 제2반 주공배들APT 102동 101~1509”로 하고,
 “서면 선평리 배들3리 제2반 주공배들APT 107동 101-1506”을 “서면 선
 평리 배들3리 제2반 주공배들APT 108동 101-1506”으로 한다.

별표 1 서면 행정리 중 선평리를 선평1리로 하고, 선평1리 다음에 선평2리,
 선평3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법정리	행정리	반 명	구역
		⋮	⋮	⋮
		선평2	제1반	선평리 984번지 빛찬들아파트 301동 101~1808호, 상가동
			제2반	302동 101~1808호
			제3반	303동 101~1812호
		선평3	제1반	304동 101~1508호
			제2반	305동 101~1712호
		⋮	⋮	⋮

별표 2 도사동 38통 다음에 39통~41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지번 및 경계확정)
도사동	39	1	오천동 953-2 순천오천 영무예다음아파트 101동 101~1301호, 302~1302호, 303~1303호, 104~1304호, 105~1305호, 106~1306호
		2	102동 101~1501호, 302~1502호, 303~15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3	103동 101~1501호, 202~1502호, 103~1503호 104~1704호, 105~1705호, 106~1706호
	40	1	오천동 951번지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201동 301~1601호, 202~16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205호, 106~1206호
		2	202동 101~1601호, 102~1602호, 103~1603호 304~1604호
		3	203동 101~1501호, 3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	204동 101~1501호, 102~1502호, 303~1503호, 104~1504호
		5	205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204~2004호
	41	1	206동 2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105~1205호, 106~1206호
		2	207동 101~2001호, 302~2002호, 303~2003호, 104~2004호, 105~1205호, 306~1206호
		3	208동 101~1501호, 302~1502호, 103~1503호, 304~2004호, 305~2005호, 106~2006호

별표 2 덕연동 69통 1반부터 6반까지 관할구역 중 “부영12차아파트” 를
“울산에코지오” 로 한다.

별표 2 왕조2동 22통 1반부터 6반까지 관할구역 중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1101동, 1102동” 을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101동, 102동”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읍. 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별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읍면별	법정리	행정리	반명	구역
서면	⋮	⋮	⋮	⋮	서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2동 101~1509
	선평	배들1	제1반	주공배들APT 101동 101~1509 102동 101~1509		선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반	주공배들APT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들3	제1반	주공배들APT 107동 101-150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면			제2반	주공배들APT 107동 101-1506	서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8동 101-1506
			제3반	주공배들APT 109동 101-1506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선평	선평	제1반	신평		선평	선평1	제1반	신평
			제2반	강변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선평2	제1반	빛찬들아파트 301동 101~1808호	
							제2반	빛찬들아파트 302동 101~1808호	
							제3반	빛찬들아파트 303동 101-1812호	
						선평3	제1반	빛찬들아파트 304동 101-1508호	
							제2반	빛찬들아파트 305동 101-1712호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현행과 같음)	
	<신설>			도사동	39	1	오천동 953-2 순천오천 영무예다움아파트 101동 101~1301호, 302~1302호, 303~1303호, 104~1304호, 105~1305호, 106~1306호
						2	102동 101~1501호, 302~1502호, 303~15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3	103동 101~1501호, 202~1502호, 103~1503호 104~1704호, 105~1705호, 106~1706호
	<신설>			도사동	40	1	오천동 951번지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201동 301~1601호, 202~16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205호, 106~1206호
						2	202동 101~1601호, 102~1602호, 103~1603호 304~1604호
						3	203동 101~1501호, 3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4	204동 101~1501호, 102~1502호, 303~1503호, 104~1504호
						5	205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204~2004호
	<신설>			도사동	41	1	206동 2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105~1205호, 106~1206호,
						2	207동 101~2001호, 302~2002호, 303~2003호, 104~2004호, 105~1205호, 306~1206호
						3	208동 101~1501호, 302~1502호, 103~1503호, 304~2004호, 305~2005호, 106~2006호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덕연동	69	⋮	⋮	덕연동	69	(현행과 같음)	
		1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1동 101~1701, 102~1702호 103~1603, 104~1604호 105~1505, 106~1506호			1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1동 101~1701, 102~1702호 103~1603, 104~1604호 105~1505, 106~1506호
		2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2동 101~1001, 102~1002호 103~1803, 104~1804호			2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2동 101~1001, 102~1002호 103~1803, 104~1804호
		3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3동 101~1801, 102~1802호 103~1703, 104~1704호 105~1605, 106~1106호			3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3동 101~1801, 102~1802호 103~1703, 104~1704호 105~1605, 106~1106호
		4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4동 101~1801, 102~1802호 103~1703, 104~1304호			4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4동 101~1801, 102~1802호 103~1703, 104~1304호
		5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5동 101~1601, 102~1602호 103~1603, 104~1104호, 상가			5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5동 101~1601, 102~1602호 103~1603, 104~1104호, 상가
		6	연향동 1631 부영12차아파트 1206동 101~1801, 102~1802호 103~1603, 104~1604호			6	연향동 1631 울산에코자이 1206동 101~1801, 102~1802호 103~1603, 104~1604호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왕조2동	22	⋮	⋮	왕조2동	22	(현행과 같음)	
		1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u>1101동</u>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상가			1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u>101동</u>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상가
		2	왕지아파트 <u>1101동</u> 501 ~ 511호,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2	왕지아파트 <u>101동</u> 501 ~ 511호,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3	왕지아파트 <u>1101동</u> 901 ~ 911호, 1001 ~ 1011호, 1101 ~ 1111호, 201 ~ 1211호			3	왕지아파트 <u>101동</u> 901 ~ 911호, 1001 ~ 1011호, 1101 ~ 1111호, 1201 ~ 1211호
		4	왕지아파트 <u>1101동</u> 1302 ~ 1311호, 1402 ~ 1411호, 1502 ~ 1511호			4	왕지아파트 <u>101동</u> 1302 ~ 1311호, 1402 ~ 1411호, 1502 ~ 1511호
		5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u>1102동</u>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501 ~ 511호,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5	조례동 1803 왕지아파트 <u>102동</u> 101 ~ 111호, 201 ~ 211호, 301 ~ 311호, 401 ~ 411호, 501 ~ 511호, 601 ~ 611호, 701 ~ 711호, 801 ~ 811호
		6	왕지아파트 <u>1102동</u> 901 ~ 911호, 1001 ~ 1011호, 1101 ~ 1111호, 1201 ~ 1211호, 1302 ~ 1311호, 1402 ~ 1411호, 1502 ~ 1511호			6	왕지아파트 <u>102동</u> 901 ~ 911호, 1001 ~ 1011호, 1101 ~ 1111호, 1201 ~ 1211호, 1302 ~ 1311호, 1402 ~ 1411호, 1502 ~ 1511호

□ 위치도

○ 서면 선평리 984번지 빛찬들아파트



○ 관할구역



순천오천 영무에다음아파트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 신규아파트 및 주택지역 통반장 임명(2개리 3개통, 16개반 중)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 바탕
- 아파트 신설 및 주택지역 입주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 지역에 대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행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이통장	799	804	<u>5</u>	
반 장	2,257	2,273	<u>16</u>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68,800		-17,200	-17,200	-17,200	-17,200
세입(a)						
세출(b)	68,800		17,200	17,200	17,200	17,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68,800		17,200	17,200	17,200	17,200
시 비	68,800		17,200	17,200	17,200	17,2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7,200천원(리통장 5명/반장 16명)

○ 산출기초

- 리통장 기본수당 : $2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5\text{명} = 12,000\text{천원}$
- 리통장 상여금 : $2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5\text{명} = 2,000\text{천원}$
- 리통장 회의참석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5\text{명} = 2,400\text{천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16\text{명} = 8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안전행정국 총무과 과장 지석호(☎ 749-5457)
시정담당 이수동(☎ 749-5625)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조정 및 법률과 중복된 조례 적용기관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 상세규정 수정(안 제3조)
- 상위법령에 근거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 수정(안 제8조)
- 상위법에 위배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 삭제(안 제10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1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10.(여성가족과-3370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8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6.(순천시 공고 제2017-1555호)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 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	제1조(목적)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	제1조(목적)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이란 -----	1. -----이란 -----	1. -----이란 -----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	2. -----	2. -----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	3. -----	3. -----
4. “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	4. -----	4. -----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이란 -----	5. -----이란 -----	5. -----이란 -----
				-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 내-----

현행	개정안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생략)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및 순천시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④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0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u> <u>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u> <u>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u> <u>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u> <u>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u> <u>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u>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u>	<u>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생략)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3. (생략)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 ----- ----- -----.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현행과 같음)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대기환경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및 시의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조문의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1조~제14조, 제17~제18조)
- 제목 “(재정 확보 및 지원 등)” 을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으로 변경(안 제 13조)
-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
-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9. ~ 10. 1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11.(여성가족과-310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15.(전략기획과-1268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9.(순천시 공고 제2017-1428호)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순천시”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의” 를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 을 각각 “이란”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는” 을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년차별” 을 “연차별” 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환경기본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시는” 을 각각 “시장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는” 을 각각 “시장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시 환경위원회” 를 “순천시 환경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 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기타” 를 “시의회 의원, 그 밖에” 로, “자중에서 시장이” 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는” 을 각각 “시장은” 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재정 확보 및 지원등)” 을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연구기관, 시민,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 사업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는” 을 각각 “시장은”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 를 “필요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순천시(이하 “시”라 한다)</u>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순천시</u> ----- ----- ----- ----- ----- ----- -----.
제2조(기본이념) ① <u>시의</u>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u>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뜻은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1. ---- <u>이란</u> -----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 <u>이란</u> ----- ----- ----- -----.

현행	개정안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6. (생략)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u>년차별</u>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u>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야 한다.	3. -----<u>이란</u> ----- ----- -----. 4. -----<u>이란</u> ----- ----- ----- ----- -----. 5. -----<u>이란</u> ----- ----- ----- ----- -----. 제4조(시의 책무)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 -----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u> ----- ----- ----- <u>연차별</u> ----- ----- <u>환경기본계획</u> ----- ----- -----.

현행	개정안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u>시는</u>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u>시는</u>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u>시는</u>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u>시는</u>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u>시는</u>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u>시는</u>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③ <u>시장은</u> ----- ----- -----. ④ <u>시장은</u> ----- -----. ⑤ <u>시장은</u> ----- ----- ----- ----- -----. ⑥ <u>시장은</u> ----- -----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u>시장</u> <u>은</u> ----- ----- ----- -----. ② <u>시장은</u> ----- ----- -----.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u>시는</u>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u>시장</u> 은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① · ② (생략)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는</u>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u>시장</u> 은 ----- ----- -----.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u>시는</u>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u>시 환경위원회</u> (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u>시장</u> 은 ----- --- <u>순천시 환경위원회</u> ----- -----.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u>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u>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u>시장</u> 이 위촉한다.	② ----- ---- <u>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u> ----- ----- <u>시의회 의원</u> , 그 밖에 ----- ----- 사람 중에서 <u>시장</u> 이 임명하거나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u>시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8. <u>기타</u>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⑥ (생략) 제10조(환경백서) ① <u>시는</u>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확보 등) ① <u>시는</u>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를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u>시는</u>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백서) ① <u>시장은</u> ----- ----- -----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확보 등) ① <u>시장은</u> ----- ----- ----- ----- -----. ② <u>시장은</u> ----- ----- ----- ----- ----- -----.

현행	개정안
③ <u>시는</u>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u>시는</u>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u>시는</u>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확보 및 지원등) ① <u>시는</u>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u>시는</u>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u>시장은</u> ----- ----- ----- -----. ④ <u>시장은</u> ----- ----- ----- ----- -----.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u>시장은</u> ----- ----- ----- ----- -----.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u>시장은</u> ----- ----- -----. ② <u>시장은</u>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연구기관, 시민,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4조(환경 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u>시</u>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u>시는</u>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u>시</u>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환경 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u>시장</u>은 ----- ----- ----- -----. ② <u>시장은</u> ----- ----- ----- ----- ----- -----.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u>시장</u>은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우대 조치 및 부진업체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마련 (제8조)
- 대행업무 평가 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인원 기준 마련 (제10조)
- 평가결과 우수업체 우대 조치 및 부진업체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제22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5. ~ 10. 1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여성가족과-299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13.(전략기획과-125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5.(순천시 공고 제2017-1416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를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주민대표”를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현장평가단”을 “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배점 및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100점	30점	40점	30점

2.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방향 :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대 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등

(2)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 평가내용 : 전량 및 정시수거 여부, 종합만족도, 차고지 및 휴게실 관리실태, 현장민원 처리실태 등

(3) 실적서류 평가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		기타
		대행기간 중	입찰 또는 재계약 시	
우수	60점 이상	대행구역 확대, 업체포창 또는 개인포창	입찰참여 또는 적격심사 시 가점(3점) 부여	90점 이상 우수 업체 중 상위 1위 업체에 대하여 1,000만원 지급 - 상위 1위 업체를 적환장 운영 주관사로 지정
미흡	60점 미만	대행구역 축소	입찰참여 또는 적격심사 시 감점(3점) 부여	대행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0만원 차감 지급
부진	50점 미만	1차 :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2차 :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입찰참여 제한	

※ 대행구역 확대 또는 축소는 대행기간 중 신규 청소구역이 발생하거나 청소구역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반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u>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u>를 실시하고, <u>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u> <u>대행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u> <u>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u> <신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 <후단 삭제>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u>주민대표</u> 등으로 이루어진 <u>현장평가단</u>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 ----- -- <u>주민대표, 공무원</u> ----- <u>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생략)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다음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통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사항만을 규정한 조항 삭제
- 변경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안내문구 조정

2. 주요내용

- 조례 중 용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는 “종량제봉투”로 통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은 관련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중 일부 사항만을 규정한 조항 삭제(제13조)
- 「별표 6」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상 안내문구 조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29. ~ 10.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여성가족과-299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20.(전략기획과-1284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29.(순천시 공고 제2017-1478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을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을 “종량제봉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쓰레기봉투가”를 “종량제봉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리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을 “(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쓰레기봉투의”를 “종량제봉투의”로, “쓰레기봉투를”을 “종량제봉투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 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 당 처리비용 : $\text{연간총처리비용} \div \text{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 $\text{종량제봉투 판매수입} \div \text{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100$
4. 종량제봉투 제작비 :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별표 5]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 (제23조 관련)

용량	용도	치수(cm)		묶는 끈(cm)		두께(mm)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분괴성	탄산칼슘 함유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용량	용도	치 수(cm)		높이 (묶는부분) (cm)	묶는 부분(cm)		
		나비	높이		묶는선평	손잡이길 이	손잡이끈 폭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10ℓ	"	36	53.5	16.5	7	12	5
20ℓ	"	45	65.3	19.3	8	15	6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24조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빠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ℓ) -일반용-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빠다귀,어패류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 주 : 1. 글씨 주위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건물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⑦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u>규격봉투</u> 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한다.	⑧ ----- ----- <u>종량제봉투</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② (생략)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삭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	

현행	개정안
<u>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u> 4. <u>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u> 5. <u>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u> 6. <u>그 밖에 시민불편 등으로 긴급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④ ~ ⑦ (생략)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 ③ (생략) ④ <u>쓰레기봉투</u>는 고밀도 합성수지나 생분괴성 물질(지방족폴리에스테르+전분/고밀도 합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유 고밀도 합성수지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조(<u>쓰레기봉투의 제작 등</u>) ① <u>쓰레기봉투</u>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u>쓰레기봉투</u>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 인증표시는 최소 크기로 축소 표기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종량제봉투</u>-----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u>종량제봉투의 제작 등</u>) ① <u>종량제봉투</u>-----. ② ---- <u>종량제봉투</u>-----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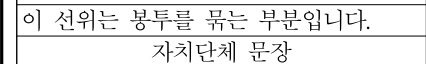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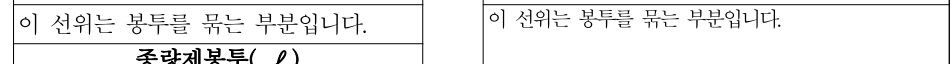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시장은 <u>쓰레기봉투</u>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 규격기준 등 단체 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5조(<u>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u>)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u>쓰레기 봉투판매소</u>(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u>쓰레기봉투</u>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u>쓰레기봉투</u>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u>환경정리원</u>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생략) 제26조(<u>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u>) ① 시장은 <u>쓰레기봉투</u>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쓰레기봉투</u>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u>종량제봉투</u>----- ----- -----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u>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u>) ① ----- <u>종량제봉투 판매소</u>----- -----. ----- ----- -----. ② ----- <u>종량제봉투</u>를----- -----. -- <u>종량제봉투</u>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환경미화원</u> -----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u>종량제봉투의 판매업무 위탁</u>) ① ---- <u>종량제봉투</u>----- ----- <u>종량제봉투</u>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u>쓰레기봉투</u>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쓰레기봉투</u>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u>쓰레기봉투</u> 판매대금의 수납·이체 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③ <u>쓰레기봉투</u>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u>규격봉투</u>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u>쓰레기봉투</u>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u>종량제봉투</u> ----- ----- -----. 1. (현행과 같음) 2. <u>종량제봉투</u>----- ----- 3. <u>종량제봉투</u> ----- ----- 4. ~ 7. (현행과 같음) ③ <u>종량제봉투</u> ----- ----- ----- -----. 제27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u>종량제봉투</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판매자 준수사항)① ----- ----- -----. 1. ----- <u>종량제봉투</u> ----- ----- -----.

현행	개정안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u>쓰레기봉투</u>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 <u>종량제봉투</u> ----- ----- -----.
3. 판매자는 <u>쓰레기봉투</u> 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u>쓰레기봉투</u> 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 <u>종량제봉투</u> 의 ----- ----- ----- <u>종량제봉투</u> 를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u>쓰레기봉투</u> 가 불량인 경우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 ----- <u>종량제봉투</u>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u>쓰레기봉투</u> 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u>종량제봉투</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 ----- -----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u>쓰레기봉투</u> 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1. ----- <u>종량제봉투</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d>규격</td><td>3ℓ</td><td>5ℓ</td><td>10ℓ</td><td>20ℓ</td><td>50ℓ</td><td>100ℓ</td></tr><tr><td>가격</td><td>70</td><td>110</td><td>220</td><td>440</td><td>1,060</td><td>2,120</td></tr></table>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봉투판매금액+공공용,무상지급봉투 판매환산금액) ÷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100 4. 봉투 제작비 :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제21조 및 제25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d>규격</td><td>3ℓ</td><td>5ℓ</td><td>10ℓ</td><td>20ℓ</td><td>50ℓ</td><td>100ℓ</td></tr><tr><td>가격</td><td>70</td><td>110</td><td>220</td><td>440</td><td>1,060</td><td>2,120</td></tr></table>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목표치%) + 판매수수료 (주) 1.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한다. 2. ℓ당 처리비용 : 연간총처리비용÷봉투용량(판매된 봉투+무료 지급된 봉투+공공용봉투) 3.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4. 종량제봉투 제작비 :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작 단가 5.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가격	70	110	220	440	1,060	2,120																							

현행									개정안								
[별표 5]									[별표 5]								
쓰레기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종량제봉투의 규격기준(제23조 관련)								
용량	용도	치수(cm)		묶는 끈(cm)		두께(mm)			용량	용도	치수(cm)		묶는 끈(cm)		두께(mm)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분괴 성	탄산칼 슘함유			나비	높이	나비	길이	HDPE	생분괴 성	탄산칼 슘함유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3ℓ	일반용	22	39.5	5	9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5ℓ	일반용	26	46.5	6	10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10ℓ	일반용	33	56.5	7	12	0.025	0.025	0.030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2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42	69.5	8	15	0.030	0.030	0.03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50ℓ	일반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	56	91.5	12	19	0.040	0.040	0.04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100ℓ	일반용 공공용	71	113.5	15	23	0.050	0.050	0.055
용량	용도	치수(cm)		높이(묶는부분) (cm)	묶는 부분(cm)				용량	용도	치수(cm)		높이 (묶는부분) (cm)	묶는 부분(cm)			
		나비	높이		묶는선평폭	손잡이길이	손잡이끈폭				나비	높이		묶는선평폭	손잡이길이	손잡이끈폭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3ℓ	재사용	32	3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5ℓ	"	32	41.5	15	5	10	4	
10ℓ	"	36	53.5	16.5	7	12	5		10ℓ	"	36	53.5	16.5	7	12	5	
20ℓ	"	45	65.3	19.3	8	15	6		20ℓ	"	45	65.3	19.3	8	15	6	

현행	개정안
[별표 6]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 시면 됩니다. - 재사용 - 1.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다음날 오전 2 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봉투에 음식물쓰 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3336,3436) 제작업소인증표사	[별표 6]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ℓ) -재사용-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생활쓰레기만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 니다. 【빠다귀,어패류깍데기,과일씨,계란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 3. 재활용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 장 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혼합배출 되거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수거 하지 않습니다. ※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아 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증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시에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 거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현행		개정안	
[별표 6]		[별표 6]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차차단체 문장 재질:고밀도합성수지 쓰레기봉투(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3336,3436) 제작업소인증표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ℓ)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순천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8)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차차단체 문장 재질:고밀도합성수지 김장쓰레기 전용봉투(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749-6209,6413) 제작업소인증표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ℓ) - 김장철 한시 사용 - 1. 이 봉투는 김장철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며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소금에 간한 채소류찌꺼기 등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3. 김장쓰레기는(일몰 후 ~다음날 새벽 3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자에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이 봉투에 일반쓰레기 또는 김장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량봉투는 판매처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시마크 순천시장 관인 연락처 : 순천시 자원순환과 (전화: 749-6209) 제작업소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현행	개정안
[별표 7]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쓰레기 봉투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25조 관련)  청색 DIC : 317 녹색 DIC : 92 종량제 봉투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제37조 관련) 1. 관련 출석 요청서 : 제 호(년 월 일)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있음 . 없음 3. 소명요지(의견이 있을 경우) : 4. 기타(증거자료 등) : 년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table><thead><tr><th colspan="5">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th></tr></thead><tbody><tr><td rowspan="3">납부의무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상호</td><td></td><td>소재지</td><td></td></tr><tr><td colspan="2">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위반사항</td><td colspan="3"></td></tr><tr><td>과태료 금액</td><td></td><td>당초납부 기일</td><td colspan="2"></td></tr><tr><td colspan="5">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td></tr></tbody></table>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제37조 관련) 1. 관련 출석 요청서 : 제 호(년 월 일)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있음 . 없음 3. 소명요지(의견이 있을 경우) : 4. 기타(증거자료 등) : 년월일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table><thead><tr><th colspan="5">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th></tr></thead><tbody><tr><td rowspan="3">납부의무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td></tr><tr><td>상호</td><td></td><td>소재지</td><td></td></tr><tr><td colspan="2">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위반사항</td><td colspan="3"></td></tr><tr><td>과태료 금액</td><td></td><td>당초납부 기일</td><td colspan="2"></td></tr><tr><td colspan="5">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td></tr></tbody></table>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 순천시장 (인)																																																																													

현행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주소			
	상호					상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순천시장 귀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1조)
 - 월 70,000원 ⇒ 월100,000원
- 지급중지 규정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건과 통일(안 제15조 2항)
 - 중지사유 발생 기준일을 월 15일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600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78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7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 공고 제2017-1576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70,000원” 을 “100,000원”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u>70,000원</u> 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 ----- <u>100,000원</u>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 등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 중지 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11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이 수반됨(월 70,000원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1,293,120	-	-323,280	-323,280	-323,280	-323,280
세입(a)	-	-	-	-	-	-
세출(b)	1,293,120	-	323,280	323,280	323,280	323,2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시비	1,293,120	-	323,280	323,280	323,280	323,28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018년) 323,280천원 / 총 보훈명예수당(1,077,600천원)의 30%
- 보훈명예수당 지급 : 898명 × 30,000원 × 12월 = 323,28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민원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윤자(☎ 749-6180)
사회복지담당 변동일(☎ 749-622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정의 개정(제2조)
 -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다 간략하고 명확히 규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추가(제3조)
 - 지급대상을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개정
 - 부칙 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제4조1호)
 - 참전명예수당 : “월 7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개정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23. ~ 11.1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600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78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7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0.(순천시 공고 제2017-1577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상자로”를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상자는 지원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호 중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를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받는 자”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가”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u>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6·25전쟁에 <u>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u>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u>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u> 3. 6·25전쟁에 <u>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u> 4. 6·25전쟁에 <u>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u> 5. <u>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u> 제3조(지원대상) <u>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u> 1.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u>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u> 제3조(지원대상) ----- ----- --- <u>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 1. <u>참전유공자라도 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u>자로서</u> 보상금을 <u>받는 자</u> 제4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참전유공자</u>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u>70,000원</u> 지급 2. <u>참전유공자</u>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3. (생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u>자</u>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u>자</u>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③ (생략)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신청 받은 <u>자</u>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2. ----- ---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 <u>사람으로서</u> ---- <u>받는 사람</u> 제4조(지원사업) ----- ----- <u>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1. ----- <u>100,000원</u> -- 2. <u>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가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u>사람은</u> ----- ----- ----- <u>사람이</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람에</u> ----- ----- ----- -----.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u>생년월일</u>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u>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u> <u>(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u>													수수료	
													없음	

현행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u>주민등록번호</u>				-								
	주		소													
	사		망 일 자													
신 청 인	성	명		<u>주민등록번호</u>												
	주		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 의 관 계				지 급 기 관 (예금계좌)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u>생년월일</u>				-								
	주		소													
	사		망 일 자													
신 청 인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 의 관 계				지 급 기 관 (예금계좌)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3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그미망인으로 한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192) 지급
- 제4조(지원사업)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인상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4조 제1호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이 수반됨(월 70,000원 지급 ⇒ 월 100,000원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2,868,480	-	-717,120	-717,120	-717,120	-717,120
세입(a)	-	-	-	-	-	-
세출(b)	2,868,480	-	717,120	717,120	717,120	717,1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시 비	2,868,480	-	717,120	717,120	717,120	717,12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018년 : 717,120천원(총 참전명예수당(1,622,400천원)의 44,2%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 1,352명 × 30,000원 × 12월 = 486,720천원

- 참전명예수당 확대(미망인) 지급 : $192\text{명} \times 1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230,4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민원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윤자(☎ 749-6180)
사회복지담당 변동일(☎ 749-6220)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복지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설의 목적과 명칭·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운영방식, 입주단체,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설물의 이용, 입주허가,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29. ~ 10. 1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24.(여성가족과-287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9. 25.(전략기획과-1307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25.(전략기획과-1307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29.(순천시 공고 제2017-1476호)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원연향길 15에 둔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건강관리실
3. 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식) 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위탁 및 운영·관리) ③시장은 보훈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269,029	-9,026	-65,000	-65,000	-65,000	-65,000
세입(a)						
세출(b)	269,026	9,026	65,000	65,000	65,000	6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시비	269,026	9,026	65,000	65,000	65,000	65,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산출 기초

- 2017년 : 9,026천원

- 인건비(2명) 및 5대 보험 : 6,026천원(1,506,460원×2명×2월)
-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3,000천원

- 2018년 : 65,000천원

- 인건비(2명) 및 5대 보험 : 42,022천원(1,573,770원×2명×12월)
-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22,978천원

※ 인건비 = 월209시간×법정 최저임금(6,470원/7,53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민원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윤자(☎ 749-6180)
 사회복지담당 변동일(☎ 749-6220)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7조)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1. 16.(여성가족과-389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20.(전략기획과-141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제2017-1581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공중목욕장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목적, 이용대상,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예산지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27. ~ 10. 19.)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여성가족과-320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26.(전략기획과-131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27.(순천시 공고 제2017-1506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 공중목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각 목욕장별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주민 : 2,000원
2. 노인 : 1,000원
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장애인(1급~6급) : 무료

②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연도 개시 30 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 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 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목욕장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공중목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2.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이장 대표
 3.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부녀회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예산지원) 시장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2. 신·개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등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에 공중목욕장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노인장애인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노인장애인과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읍·면장

【별표】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주암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송광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0-7	
별량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해룡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황전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7	
월등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월등1길 109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을 정비(별표 3)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6.)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11.(여성가족과-339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86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6.(순천시 공고 제2017-1554호)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table>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th></tr> <tr> <td>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4. 택지개발·구획정리 등 시설물 관련사업 시공자가 사업구역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 정보를 GIS전산파일 형태로 순천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산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td><td>100%</td></tr> <tr> <td> 1.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 명의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td><td>50%</td></tr>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4. 택지개발·구획정리 등 시설물 관련사업 시공자가 사업구역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 정보를 GIS전산파일 형태로 순천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산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100%	1.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 명의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0%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table>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th></tr> <tr> <td>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td><td>100%</td></tr> <tr> <td>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td><td>50%</td></tr>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추진을 위해 협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4. 택지개발·구획정리 등 시설물 관련사업 시공자가 사업구역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 정보를 GIS전산파일 형태로 순천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산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100%												
1.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 명의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0%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6호
----------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김인곤 의원

1. 개정이유

-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상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6개 부문에서 각1명씩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매년 1명의 수상자를 선정토록 개정

2. 주요내용

- (현행)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홍보, 교육·과학·체육, 환경 6개 부문에서 각 1명씩 6명을 선정하여 시상
⇒ (개정)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의 수상자 선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순천시민의 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시상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두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제2조 각 호의 수상 종류에서**”를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환경과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이어야**”를 “**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추천부문	세부 항목	사전 심사 부서	
		주관부서	관련부서
지역개발	도시, 건설	도시과	건설과
산업경제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임업	산림소득과	
	수산	순천만보전과	
	상공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교통	교통과	
사회복지	시민복지, 근로후생, 호국보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효행선행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사업	평생학습과	
	공공질서	시민소통과	
문화 관광 홍보	전통, 예술, 문학	문화예술과	
	관 광	관광진흥과	
	언 론	홍보전산과	
교육과학 체육	교육, 인문과학	평생학습과	
	체육	스포츠산업과	
환경	생태보전, 대기, 수질	환경보호과	순천만보전과
	재활용	자원순환과	

※ 사전 심사부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조직표에 의하여 운영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u>순천시민의 상</u> (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순천시민의 상</u> ----- ----- -----.
제2조(수상의 종류) <u>시민의상 수상</u>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지역개발부문</u> : 도시, 건설 등 <u>지역사회 개발분야</u> 2. <u>산업·경제부문</u>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교통 등 <u>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u> 3. <u>사회복지부문</u> : 시민복지, 효행 선행자, 근로후생, 호국보훈, 청소년사업, 공공질서 분야 4. <u>문화·관광·홍보부문</u> : 전통문화, 예술, 문학, 관광, 언론분야 5. <u>교육·과학·체육부문</u> : 교육, 인문과학, 체육 분야 6. <u>환경부문</u> : 생태보전, 대기, 수질, 재활용분야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 <u>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u> ”이라 한다.

<신 설>

제3조(수상 대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수상 종류에서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
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생 략)

제3조(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시상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두명 이상으로 할 수 있
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 대상자 자격) ① -----
-----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
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환경과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
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
전에 -----
-----.

② -----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
람에 대하여도 수상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수상인원) ① <u>시민의 상의 부문별 수상 인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 각 1인으로 한다.</u> ② <u>제1항의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u>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u> 이어야 한다. ②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 1. 2. (생략)	<u><삭 제></u> 제7조(심사기준) ① ----- ----- ---- <u>평가하여야</u> ----- -----. 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2. (현행과 같음)
--	--

현행

【별표 1】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수상의 종류	세부 항목	사전 심사 부서	
		주관부서	관련부서
지역개발	도시, 건설	도시과	<u>건설재난관리과</u>
산업경제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u>기술보급과</u>
	임업	산림소득과	
	수산	<u>관광진흥과</u>	
	상공	<u>경제통상과</u>	
	교통	교통과	
사회복지	시민복지, 근로후생, 호국보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효행선행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사업	평생학습과	
	공공질서	시민소통과	
문화 관광 홍보	전통, 예술, 문학	문화예술과	
	관 광	관광진흥과	
	언 론	홍보전산과	
교육과학 체육	교육, 인문과학	<u>평생학습지원과</u>	
	체육	스포츠산업과	
환경	생태보전, 대기, 수질	환경보호과	
	재활용	자원순환과	

※ 사전 심사부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조직표에 의하여 운영한다.

개정안

【별표 1】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

추천부문	세부 항목	사전 심사 부서	
		주관부서	관련부서
지역개발	도시, 건설	도시과	<u>건설과</u>
산업경제	농업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u>미래농업과</u>
	임업	산림소득과	
	수산	<u>순천만보전과</u>	
	상공	<u>경제진흥과</u>	<u>투자유치과</u>
	교통	교통과	
사회복지	시민복지, 근로후생, 호국보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효행선행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사업	평생학습과	
	공공질서	시민소통과	
문화 관광 홍보	전통, 예술, 문학	문화예술과	
	관 광	관광진흥과	
	언 론	홍보전산과	
교육과학 체육	교육, 인문과학	<u>평생학습과</u>	
	체육	스포츠산업과	
환경	생태보전, 대기, 수질	환경보호과	<u>순천만보전과</u>
	재활용	자원순환과	

※ 사전 심사부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조직표에 의하여 운영한다.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7호
----------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발 의 자 : 나안수, 김인곤, 김병권 의원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예술인” 정의 신설 : 순천예총 소속단체 회원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예술인 추가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술인”이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단체의 회원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단체가”를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인·단체는”을 각각 “법인·단체 등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인·단체”를 “법인·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단체의 장”을 “법인·단체의 장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예술인”이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시회 소속단체의 회원으로서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법인·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 ① ----- 법인·단체 등은 ----- ----- -----. ② ----- 법인·단체 등은 ----- ----- -----.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

----- 법인
· 단체 등-----

-----.

② ----- 법
인·단체 등-----

-----.

③ ----- 법인·단체의 장 및
예술인-----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8호
----------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발 의 자 : 나안수, 김인곤,
김병권 의원

1. 개정이유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APC 운영위원회에 APC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는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 청취 가능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능) (생략) <u><신설></u>	제15조(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9호
----------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발 의 자 : 허유인, 유혜숙, 김재임 의원

1. 개정이유

- 청소년교향악단을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 운영

2. 주요내용

- 제2조 예술단의 종류 : ‘청소년교향악단’을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리
- 제3조 구성
 - ‘합창단’에 안무담당 신설
 - ‘청소년교향악단’ 구성 신설 : 지휘자 등 80명 이내
- 제15조 실비보상
 -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에게 “장학금” 지급
⇒ “음악활동 장려금” 지급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을”을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악보담당”을 “악보담당, 안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단원, 교향악단 등 150명”을 “단원 등 80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악기지도담당, 단원 등 80명 이내

제4조제3항 중 “민속예술단”을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소년소녀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장학금”을 “음악활동 장려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술단의 종류)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u>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u>		제2조(예술단의 종류)	-----	----- ----- ----- ----- ----- ----- <u>순천시립민속예술단</u> (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	-----.
1. 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기획담당, 수석반주자, 반주자, <u>악보담당</u> ,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80명 이내		1.	-----	----- --- <u>악보담당, 안무담당</u> ----- -----
2.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담당, 안무자, <u>단원</u> , <u>교향악단 등 150명</u> 이내		2.	-----	----- ----- <u>단원 등 80명</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삭 제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의 지휘자와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한다.

제15조(실비보상) ①·② (생략)

③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악기지도담당, 단원 등 80명 이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

제15조(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소녀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음악활동 장려금-----.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현재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안 제10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28. ~ 10. 19.)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0.(여성가족과-3529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26.(전략기획과-1316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28.(순천시 공고 제2017-1484호)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1개월” 을 “3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u>1개월</u>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3개월</u> -----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사유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되었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장의 구역을 정함
-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함
- 상인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25.(여성가족과-327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6.(전략기획과-1378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6.(순천시 공고 제2017-1553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순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순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상인회 재정지원) 순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순천시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순천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순천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순천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 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발행인 : 순천시장(위조방지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인쇄)
 - 보관·판매·환전 : 금융기관 등에서 대행
-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안 제4조)
 - 종류 :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 유효기간 : 5년
-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안 제5조)
 - 사용처 :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내의 중소기업자, 노점상, 시(출자·출연 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사용제한가능 업소 :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성 업소 등
- 개별가맹점 등록 및 취소(안 제6조)
- 할인 및 수수료(안 제11조)
 - 할인판매 : 구매액의 2%(명절 5%)이내
 -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 금액의 각 0.5% 이내

○ 상품권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지급
-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줌
-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중(행안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3.)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1. 7.(여성가족과-3772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10. 24.(경제진흥과-4922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1. 9.(전략기획과-154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 공고 제2017-1582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4.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2. 판매홍보, 개별가맹점 관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의 업무 : 개별가맹점주로 구성된 상인회 등의 단체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시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개별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2.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3. 그 밖에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개별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별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3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판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2(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6조제5항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개별가맹점이 제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발행인 : 순천시장(위조방지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인쇄)
 - 보관·판매·환전 : 금융기관 등에서 대행
- 할인 및 수수료(안 제11조)
 - 할인판매 : 구매액의 2%(명절 5%)이내
 -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 금액의 각 0.5% 이내
- 상품권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사랑상품권 3천원권·5천원권 각 3만장, 1만원권 6만장, 3만원권·5만원권 각 3만장 등 총 3,240백만원을 매년 발행하여 모두 판매, 환전하고 각 수수료를 0.5% 지급
- 할인 또는 포인트(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3% 지급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간제 근로자 등 1명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023,828	239,404	196,106	196,106	196,106	196,106
세입(a)	-	-	-	-	-	-
세출(b)	1,023,828	239,404	196,106	196,106	196,106	196,106

- 1차년도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8개월) 13,404천원
- 2차년도 이후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없음 / 무기계약 근로자(12개월) 20,106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023,828	239,404	196,106	196,106	196,106	196,106
시 비	1,023,828	239,404	196,106	196,106	196,106	196,10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액(2018년) : 239,404천원

○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산출기초
계	239,404	
상품권 제작	21,600	120원×18만장(3천원권·5천원권 각3만장, 1만원권 6만장, 3만원권·5만원권 각3만장)
상품권 봉투제작	3,600	120원×3만장
판매·환전수수료(판매대행점)	32,400	3,240백만원×1% (판매 0.5 + 환전 0.5)
환전대행수수료 (환전대행가맹점)	16,200	3,240백만원×0.5%
할인 또는 포인트(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비	97,200	3,240백만원×3%(판매할인 2 + 포인트 1)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프로그램, 스캐너 등)	50,000	
홍보비·기타(포스터, 현수막, 가맹점 지정서 등)	5,000	
인건비	13,404	기간제 근로자

- 순천사랑상품권 업무 보조 인건비 : 13,404천원
 - 기본급 : 60,240원×1명×21일×8개월= 10,121천원
 - 주휴수당 : 60,240원×1명×34일 = 2,049천원
 - 국민연금 : 12,170,000원×4.5% = 548천원
 - 건강보험 : 12,170,000원×3.12% = 380천원
 - 고용보험 : 12,170,000원×1.5% = 183천원
 - 장기요양보험 : 380,000원×6.55%= 25천원
 - 산재보험 : 12,170,000원×0.8%= 98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경제진흥과 과장 이재성(☎ 749-5487)
지역경제담당 탁종수(☎ 749-5733)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문화센터의 위치, 기능(안 제3조 ~ 제4조)
- 시설의 관리·운영(안 제5조)
-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안 제6조 ~ 제10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5. ~ 10. 1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여성가족과-299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12.(전략기획과-1246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5.(순천시 공고 제2017-1419호)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이하 “의료문화센터” 라 한다)란 전시관, 사무실, 주민사랑방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의료문화센터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 공마당길 97 (금곡동)에 둔다.

제4조(기능) 의료문화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수집·관리·전시
2. 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 봉사
3.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의료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의료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한다.

제7조(관람시간) ① 의료문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의료문화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의료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9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 예찰방제반장 : 미래농업과장
 - └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축산과장
 - (운영) 병해충 예찰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60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9.(전략기획과-141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 공고 제2017-1574호)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순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예찰·방제반장 : 미래농업과장
3.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축산과장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 추진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농업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사항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근거규정 마련
-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명문화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조문 신설
-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조정 :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 → 1개월 전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60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1. 2.(전략기획과-150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 공고 제2017-1585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2개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 ----- ----- ---- 1개월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 등)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임한다.</u> <u>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u>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u> <u>1. 미성년자</u> <u>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u>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⑤ 그 밖의 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다.</u> <u>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지원 중지 및 회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u>제12조 · 제13조 (생략)</u>	<u>제13조 · 제14조</u>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심의주문

-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임차료 지원이 입주 상가의 자생 능력을 저하시키고 구역 내 점포의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점포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
- 임차료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차료 지원 규정 폐지(현행 조례 제7조1항3호 및 제8조3호)
-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항 신설(개정안 제7조2항, 제8조1호)

4. 개정안 : 별첨

5. 관련법령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소요예산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11. 1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1. 16.(여성가족과-389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1. 16.(전략기획과-157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 공고 제2017-1584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활동가”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및”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를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호 중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을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한다.

제2조(임차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차료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활동가”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생략)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u>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및 지원 등</u>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u>문화예술 활동</u> -----

현행	개정안
제7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이상 제6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 ----- ----- ----- ----- 있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3. ----- ----- ----- 일부
② 제1항 제3호의 “임차료”는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금으로 산출하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세금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③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 ⑤ <u>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u> 제8조(지원 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생략) 2. (생략) 3. <u>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400만원 이내로 하되, 반기별로 3년간 지원</u> 4. <u>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행사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20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u>	④ <u>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 <u><삭 제></u> 제8조(지원 범위) ----- -----. 1. <u>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u>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2. (생략) 3. <u>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4. (생략)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u> <u><신 설></u> ② (생략)	제8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u>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10조(위원회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u> ---- 4. <u>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 ② <u>정기회의는 반기별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643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인곤, 김병권, 이옥기,
장숙희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가산금에 관한 위임 없이 조례에서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을 부과한 해당규정 삭제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훼손이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해당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멸실, 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상책임 부과 규정 삭제(안 제36조)
-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안 제37조)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방세징수법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손괴자가” 를 “원인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손해배상료의 징수방법)” 을 “(손해배상금의 징수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손해배상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손해배상 등) ①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거나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u>손괴자가</u>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 등) ① ----- ----- ----- ---- <u>-원인자가-</u>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7조(손해배상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변상금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645호
----------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 발 의 자 : 김인곤, 나안수, 장숙희
이옥기, 김병권 의원

1. 개정이유

- 정원시설 내에서 문화예술분야 전시행사 등을 통한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추진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 단체가 국가정원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전시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 가능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행·재정 지원) 시장은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행·재정 지원) 시장은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국가정원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의 임기연장 및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재정비를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4조, 제26조)
-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규제사항 재정비(제16조)
-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비(제23조)
-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명시(제3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사항 명시(제35조의3)
- 대지안의 공지의 기준 정비([별표2])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8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 기준 명시([별표3])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29. ~ 10.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11.(여성가족과-310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27.(전략기획과-1322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29.(순천시 공고 제2017-1507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8조에 따라 영 제6조의3 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를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2년” 을 “3년” 으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를 “있다” 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 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해당금액 x1: 큰금액 x2: 작은금액
Y: 해당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이행 강제금)”을 “(이행 강제금의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락시설의 용도로서 철거가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
2.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 ·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 한옥 → 외벽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2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 이상 · 장례식장 → 4미터 이상 · 한옥 → 외벽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비고

-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35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법 제14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법 제55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법 제56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시가표준액(용도변경 부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6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제1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20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용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8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3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7.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법 제2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8.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2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9.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79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u>법 제8조에 따라 영 제6조의3 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u>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 .</u>
제8조(구성 · 임기 등) ① ~ ③ (생략)	제8조(구성 ·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u>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u>3년</u> ----- -----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위원회구성과 운영) <u>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u>	<삭 제>
1. <u>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위원회 의결로 설치 운영한다.</u>	
2. <u>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	
3. <u>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심의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한다.</u>	
4. <u>소위원회는 위촉된 위원 3분의2 이상인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한다.</u>	

현행	개정안
제16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u>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허가수수료) ----- ----- ----- ----- <u>경우에는</u> ----- ----- ----- -----.
<신설>	제2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해당금액 x1: 큰금액 x2: 작은금액 Y: 해당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정)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6조(대지안의 조정) ① 법 제42조제1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③·④ (생략)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u>축사</u> 2. <u>작물재배사</u> 3. <u>종묘배양시설</u> 4. <u>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u> 제35조(이행 강제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과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신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 ----- -----. 1.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락시설의 용도로서 철거가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 2.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2]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u>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u>),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 마. (생략) 바. 그 밖의 건축물 · <u>가부터 마까지</u>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 · 장례식장 → <u>6미터</u> <신설>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u>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u>),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2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별표 2]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u>), --- ----- ----- · ----- 라. ~ 마. (생략) 바. ----- · <u>가목</u>---- <u>마목</u>----- ----- ----- · ----- <u>6미터 이상</u> · <u>한옥 → 외벽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u>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u>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u>), ----- ----- ----- · ----- 라. ----- ----- ----- (<u>상업지역에 건축하는</u>

현행	개정안
·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 가부터 마까지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 이상 · 장례식장 → 4미터 이상 〈신 설〉 비고 :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u>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u> · ----- 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 ----- · ----- 바. ----- · 가목--- 마목----- ----- ----- · ----- · 한옥 → 외벽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1. (생략) 1. <u>건축신고를 하지</u>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2. ~ 3. (생략) 4. <u>신고를 하지</u>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5. ~ 16. (생략) 2. (생략)	[별표 3] 1. (현행과 같음) 1. <u>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u>----- ----- 2. ~ 3. (현행과 같음) 4. <u>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u>----- ----- 5. ~ 1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6. 8. 12.)으로 인하여 제명과 인용조문 및 영세 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로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제1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및 지원사업 추진(제2조)
 - 사용승인 15년 경과되고,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20세대이상)
 - 안전점검 지정업체 위탁(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주택관리사단체)
 - ※ 1. 우리시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 풍덕철우아파트 등 33개단지(58동, 2,469세대)
 - ※ 2. 의무적 관리대상 : 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중앙난방)은 관리주체 점검·관리
- 지원사업 범위를 사업계획승인대상인 “20세대”에서 “30세대”로 하고, 지원사업의 범위가 일부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제6~7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항 등 인용법령 및 조문정비(제17조~18조, 제27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 ~ 9. 21.)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21.(여성가족과-2834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8. 31.(전략기획과-1189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31.(전략기획과-149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순천시 공고 제2017-1317호)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주택 조례”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를 삽입한다.

제6조 중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으로, “20세대” 를 “30세대”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 를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시장이” 를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로, “공익 시설” 을 “시설” 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52조” 를 “법 제71조” 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의 분쟁사항과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4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6.11.>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순천시 주택 조례</u>	<u>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u> <u><신설></u>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u>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에 따라 건설된 <u>20세대</u>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u>각 호와 같다.</u> 1. <u>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u>	<u>④</u>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u><삭제></u> <u>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u> 제6조(지원 범위) -----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0세대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 <u>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u> 1. <u>부대시설</u> 가. <u>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의 도로(보도포함)</u> 나. <u>가로·보안등(LED)</u>

현행	개정안
	<u>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 설비 분야</u> <u>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정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u> <u>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u> <u>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u> <u>사. 소방 및 방범시설</u> <u>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u>
<u>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u>	<u>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u> <u>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u> <u>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u> <u>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u>
3. 그 밖에 <u>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공익 시설</u>	3. ---- <u>시장이</u> 주민 공동시설로서 <u>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u> ---- <u>시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시장은 <u>법 제52조</u>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 <u>법 제71조</u>----- ----- -----.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능) <u>위원회는 법 제52조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제18조(기능) <u>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의 분쟁사항과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
1. <u>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u>	<삭 제>
2. <u>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삭 제>
제27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 ----- ----- ----- ----- -----.
1. <u>법 제44조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u>	1. <u>법 제18조</u>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u>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u>	<삭 제>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8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마중택시 운행지역을 기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운행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 수혜 확대

2. 주요내용

- 조문 중 ‘읍·면’ 을 ‘읍·면·동’ 으로 변경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5.)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18.(여성가족과-349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7.(전략기획과-138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6.(순천시 공고 제2017-1551호)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읍·면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별표 중 운행구간란 “마을회관에서 읍·면소재지까지”를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읍면장 (날인 또는 서명)”을 “○○읍면동장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로 하며, 1인 월간 이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읍·면·동 ----- -----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 ④·⑤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읍·면·동장-----.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마중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매수를 월단위로 읍·면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이용권 발행) ① ----- ----- ----- ----- 읍·면·동장 ----- ----- ----- -----.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읍·면장은 시장이 배부한 마중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제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읍·면·동장-----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시장은 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마중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별표] “마중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운행 구간</th> <th>이용자 부담요금</th> </tr> </thead> <tbody> <tr> <td>마을회관에서 읍·면소재지 까지</td> <td>100원 / 1대당</td> </tr> </tbody> </table> [별지 1호서식]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 ○○읍면장 (날인 또는 서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용 일자</th> <th>이용권 번 호</th> <th>이용자</th> <th>운행구간</th> <th>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 <td>계</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운행 구간	이용자 부담요금	마을회관에서 읍·면소재지 까지	100원 / 1대당	이용 일자	이용권 번 호	이용자	운행구간	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																																				계					② (현행과 같음) ③ ----- 읍·면·동장----- ----- ----- -----. [별표] “마중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운행 구간</th> <th>이용자 부담요금</th> </tr> </thead> <tbody> <tr> <td>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td> <td>100원 / 1대당</td> </tr> </tbody> </table> [별지 1호서식]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 ○○읍면동장 (날인 또는 서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용 일자</th> <th>이용권 번 호</th> <th>이용자</th> <th>성별</th> <th>운행구간</th> <th>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 <td>계</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운행 구간	이용자 부담요금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	100원 / 1대당	이용 일자	이용권 번 호	이용자	성별	운행구간	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																																											계					
운행 구간	이용자 부담요금																																																																																																											
마을회관에서 읍·면소재지 까지	100원 / 1대당																																																																																																											
이용 일자	이용권 번 호	이용자	운행구간	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																																																																																																								
계																																																																																																												
운행 구간	이용자 부담요금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	100원 / 1대당																																																																																																											
이용 일자	이용권 번 호	이용자	성별	운행구간	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																																																																																																							
계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중택시 탑승비용 지원

- 마중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택시요금 차액분 지원
- 대상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요금 적용
- 거리에 따른 택시요금은 대상 마을 평균값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0년)
총 비용(A-B)	-9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 입(A)	0	0	0	0	0	0
세 출(B)	9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980,000	1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 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 비	108,500	48,5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 비	671,500	131,5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5,800원 × 720명(43개 마을) × 48회(월4회×12월) ÷ 200,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도서건설국 교통과 과장 황태주(☎ 749-5533)
교통행정담당 박종은(☎ 749-5900)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임

2.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자의 자격 정비(안 제6조제1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5.)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18.(여성가족과-319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1.(전략기획과-1358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3.(순천시 공고 제2017-1535호)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 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내부 청소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해당 등 정비과제 통보의견 반영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 및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수정
 - 제2조 인용조문 수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3조 하수도법에서 하수관 거라는 용어를 하수관로로 개정함에 따라 용어 수정
 - 별지 제3호, 제8호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의견 반영 일부개정
 - 제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문삭제
 - 제20조 제4항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사후관리함
 - 제39조 제4호는 제8조 조문삭제에 따라 삭제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16. ~ 11.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25.(여성가족과-3286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2.(전략기획과-136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16.(순천시 공고 제2017-154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3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하수관거와”를 “하수관로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39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u>하수관거</u> 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제15조 ----- ----- ----- -----(<u>하수관로</u> ----- -----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도중 <u>하수관거</u>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및 <u>하수관거</u> 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 ----- <u>하수관로</u> , ----- ----- ----- <u>하수관로</u> 와 ----- -----.
제7조(<u>하수관거</u> 준설 등) ① 시장은 <u>하수관거</u>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u>하수관거</u>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u>하수관로</u> 준설 등) ① ----- <u>하수관로</u> ----- ----- ----- <u>하수관로</u> ----- -----.
② <u>하수관거</u> 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u>하수관로</u> ----- ----- ----- ----- ----- -----.

현행	개정안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생략)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로 연결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략)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 <u>하수관로</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 <u>하수관거</u>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u>하수관거</u>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 16. (생략)	③ ----- <u>하수관로</u> ----- ----- ----- <u>하수관로</u>----- ----- <u>하수관로</u> ----- ----- <u>하수관로</u>----- -----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6. (현행과 같음)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7. 11. 17.

1. 제정이유

-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정원 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능(안 제4조)
- 조직 및 운영(안 제5조 ~ 제6조)
-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정원강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안 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9. 19. ~ 10. 1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여성가족과-299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9. 15.(전략기획과-1266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9. 19.(순천시 공고 제2017-1429호)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1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정원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4.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5. 대표정원수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
6. 정원 관련 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정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별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강좌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정원산업화, 경영마케팅, 정원수 품질인증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세미나실 (회의시설) 강의실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전시실	1일	09:00 ~ 18:00

[별표 2]

정원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

○ 시 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기획전시실	130㎡	1일	40,000	20,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 오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냉난방기 - 동·하절기 의무사용 -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상설전시실	83㎡	1일	30,000	20,000	
회의실(세미나실)	87㎡	1회	20,000	5,000	
강의실 1	38㎡	1회	15,000	4,000	
강의실 2	39㎡	1회	15,000	4,000	

※ 행사준비를 위해 전시실 사용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감산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조례안 1조(목적)

-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정원 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조례안 제4조(기능)

- 정원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전문인력 양성
-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사업
- 순천대표정원수 및 관련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상품개발, 품질인증, 생산농가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등

○ 조례안 제6조(운영)

- 센터는 순천시장이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정원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이 수반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980,662	-247,100	39,900	376,800	395,640	415,422
세입(a)	4,410,125	400,000	700,000	1,050,000	1,102,500	1,157,625
세출(b)	3,429,463	647,100	660,100	673,200	706,860	742,20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3,429,463	647,100	660,100	673,200	706,860	742,203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3,429,463	647,100	660,100	673,200	706,860	742,20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5개 단위사업(생산·전시, 유통판매, 관광, 교육, 연구·창의산업)
- 사업기간 : 2018년 ~
- 산 출 액(2018년) : 647,1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80,600천원(센터장, 박사급, 석사급 등 4명)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150,000천원, 공공운영비 50,000천원
 - 재료비 : 66,500천원×1식 = 66,5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산업과 과장 임종필(☎ 749-2767)
- 정원산업담당 박 훈(☎ 749-2780)